

제300회 임시회  
기획경제위원회

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 및 가격안정에  
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
(이병도의원 대표발의)

## 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병 도  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,  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 제정되고 설립된 「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농안법”)과 공영도매시장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,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수산물의 가격과 생산자인 농어민이 받는 가격간 괴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.

그 원인은 농안법령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개정이 지연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있습니다.

이에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 시장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반영하고, 생산자와 소비자, 유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현실여건과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해 농안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합니다.

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